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다.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2. (목)까지
-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마. 용역비 : 금2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업체)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목적이 ‘동굴 조사 및 연구’에 있고, 법인설립허가증을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등록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건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2.(목) 09:00 ~ 18:00

나. 장 소: 원주시 시청로1 9층 관광과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를 참고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8. 원주시청 7층 대회의실

2) 제안설명: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제안업체에 개별통지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4)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나. 협상절차

- 1)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있다.

#### 다. 협상진행

-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라. 계약체결과 이행

-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한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한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함.

(제한금액의 5/100 이상)

##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지방계약법, 각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접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바.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사.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 자.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차. 기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담당자 ☎737-2434), 사업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관광과(담당자 ☎737-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원주시 재무관